



제319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 
제1차 복지환경위원회

---

**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**

**검 토 보 고 서**

2026. 4. 17.

**복지환경위원회**

전문위원 조 공 선

#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

## 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복지환경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

## 2. 제안이유

- 우리 시 탄소중립·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·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 하기 위하여 우리 시 출연 연구기관인 남양주시정연구원 내 남양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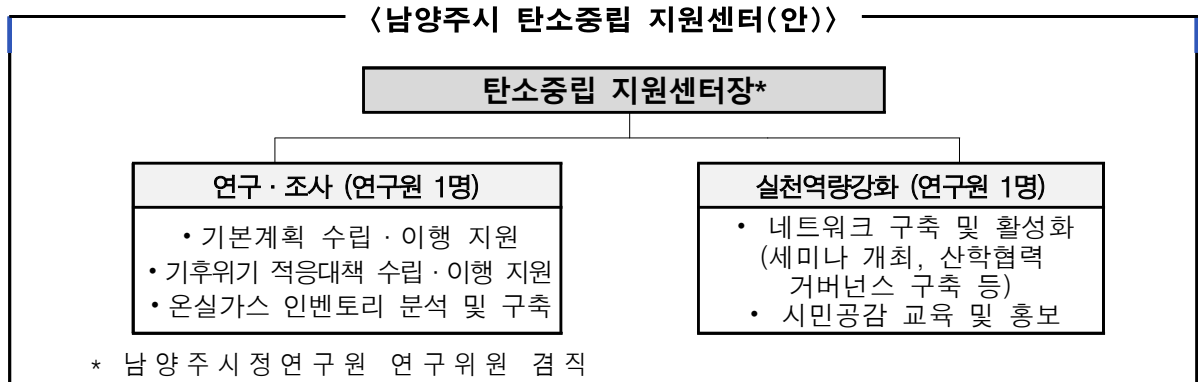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사무 내용

-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·시행 지원
- 지자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·확산
- 탄소중립 행사 개최 및 교육·홍보 등

### 나. 위탁시설 개요

- 남양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



다. 위탁 기간

○ 2026. 5. 1.~2030. 12. 31.

- 「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·운영 지침」에 따라 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

라. 수탁기관 선정방식

○ 심의위원회 개최 후 선정

마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○ 연간 소요예산 : 200백만원 (시비 100%)

- 인건비, 자산취득비, 업무추진비, 연구비용 등

- '27년 국고보조금 신청 완료, 승인 시 매년 국고 50%(100백만원) 지원 가능

바.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검토사항	검토내용				
	단계	특성	판 단 내 용	분 류	결 정
다른 사무 방식으로서의 수행가능성	①	소관사무	시장의 사무인지?	해당	적정
	②	공공성 공익성	행정서비스가 공공재에 해당하는지?	해당	적정
	③	非권리, 의무성	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는지?	해당	적정
	④	전문적, 지속적사무	전문성이 요구되며, 지속적 사무인지?	해당	적정
	⑤	전체적 사무	서비스 공급과정의 전체적 사무인지?	해당	적정
	⑥	경쟁 가능성	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원리의 적용이 가능한지?	비해당	적정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서비스의 수혜대상	• 서비스 수혜대상 시민의 범위가 편중되지 않았는지?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예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	서비스의 공급 지속성	• 장기 지속적이며, 안정적인 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한지?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예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경제적 효율성	• 위탁 시 시정연구원의 연구위원이 센터장을 겸직하므로 행정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 연구인력 확보에 사업비 활용 가능				
전문성 기술성	• 시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 가능				
성과측정의 용이성	• 수시 협의 및 과업 방향 조정이 용이하며, 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가능				
관리·운영의 투명성	• 시정발전에 관한 연구 및 주요 현안 연구를 지속 수행하므로 투명한 지원 체계 유지 가능				
총괄의견	○ 남양주시정연구원의 경우 시의 정책방향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,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피드백과 소통이 가능함.				

사.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○ 그간 추진현황

- 2025. 4. : 「제1차 남양주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」 수립
- 2026. 3. : 남양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계획 보고

○ 향후계획

- 2026. 5. : 위수탁계약 체결
- 2026. 7. : 탄소중립 지원센터 개소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관련부서 : 기후에너지과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, 「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」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·운영하고, 그 사무를 남양주시정연구원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-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·녹색성장 관련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, 에너지 전환 촉진,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 정책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,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·운영이 가능함
-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남양주시정연구원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센터 운영이 장기간(최대 5년) 지속되는 만큼, 위탁 이후에도 성과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지원 기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평가 및 관리·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

음

- 또한 탄소중립 정책은 시민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, 교육·홍보, 네트워크 구축 등 실천 확산 기능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 내실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임

**☑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**

**제68조(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·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·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시·도계획 또는 시·군·구계획의 수립·시행 지원
2.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·시행 지원
3.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·확산
4.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☑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**

**제63조(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)**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(이하 “탄소중립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 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,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3.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「울산과학

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

4.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·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## ☑ 「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」

제26조(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·지정·운영 등) ① 시장은 탄소중립·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·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지원
2.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·시행 지원
3. 지역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·확산
4.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